

제3절 국회에서의 SOFA 논의

1. SOFA 체결과정에서의 논의

1) 한미행정협정 조속체결 촉구에 관한 건의문

(국회본회의 제4대 제33회 33차 1960. 1. 18. 박상길 의원)

이제 본의원은 본의원이 제안한 「한미행정협정 조속체결 촉구 긴급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되도록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말씀 드릴 것은 이 한미행정협정의 체결은 현하 전체 한국국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자유세계 인민의 운명을 보전하고 세계정복을 열망하는 국제공산권을 격파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간에 걸쳐진 국제적 우호와 공동군으로 더욱 강화하는 현실에 있어서도 긴급히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될 절대불가결의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이 원내에 있어서 여야간의 선배동지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본의원이 외람되게 이 문제를 제안하게 된 것은 참으로 민망한 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 문제만은 전체국민과 국가의 권익에 관계되는 중대한 외교문제에 속하니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만장일치의 조치를 취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조속히 결실되도록 현념하여 주실 것을 충심으로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한미행정협정이 왜 조속히 체결되지 않으면 안되는가 거론할 것 없이

여기에는 심리적인 상대적 개념을 훨씬 넘어서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절대 불가침한 국민적 국가적 이해와 권리이라고 하는 근본문제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출경하는 여러 선배동지의원 제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한미행정협정의 체결이 절실히 요청되는 기본 이유들 중의 그 첫째는 관계업무에 있어서 도리어 현재 상태로는 묵과할 수 없는 허다한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릴 것 없이 몇 마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전체외국군인들은 이 관세업무를 규정하는 행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전혀 치외법권적 자유상태에 방치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이 나라가 「유엔」총회의 승인을 받은 당당한 주권국가인 이상은 그 면세과세의 한계는 별도로 정한다하더라도 일부는 그들의 한국내 반출입물자에 있어서는 공사간을 막론하고 이 나라의 지정된 절차하에 법적관문을 거치게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양국간 친선에 있어서 금이 잘만한 정도까지의 일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 미군인중에는 이 나라 경제질서상 관망할 수 없는 성질과 상당이상의 상품을 비공식방법에 의해 국내에 유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량된 이러한 결과는 거론할 바 없이 상당한 정도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장에 방출됨으로써 경제계의 혼란과 사회적 물의를 조성하는 요인의 일부가 되고 있음을 국정을 논의하는 이 국회로서 도저히 그냥 무관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상식이상의 내핍을 강요하면서까지 민족경제의 건전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한국의 경제재건을 위하여 막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우방미국으로서도 우리들의 이 점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당연히 진지한 성의을 가져줄 것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의 이유는 형사, 민사에 관한 재판권의 관할문제입니다. 때마침 동두천 미제7사단 제2중형전차대대 「모」 중대원에 의하여 제기된 한국여성 살발사건의 돌발은 더욱 절실히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극동의 반공보호를 지키기 위하여 공동투쟁하는 한미양국간의 민족적 감정을 도발함으로 그 우호와 단결에 금을 가게 하는 사건은 인권의 존중을 기초적 본시로 하는 민주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의 체면이나 그 나라 국민들의 궁지를 위하여서도 불행할 뿐더러 특히 취모역자식으로 사소한 흄만을 파서 민족감정을 약동하는 공산당의 악한 선전전을 봉쇄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기어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미국의 전체면을 보려드는 식의 물양식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규제 협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도의와 이성만을 가지고는 국가간의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삼스러운 상기를 원하는 바 아닙니다마는 우리는 금반의 이 사건이외에도 별씨 크게 우리들의 관심을 환기치 않을 수 없는 수다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음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경상북도 금천역에 있어서의 중학생사살사건, 파주군하에 있어서의 일부낙집단 조사사건, 군산에 있어서의 여인피살사건, 인천에 있어서의 소녀피살사건, 「콜탈」 칠을 해가지고 상자속에다 소년을 밀장했던 사건 등 이와 같이 실로 회상하는 것조차 불유쾌한 일들이 하루와 같이 각처에서 계속해서 발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러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미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을뿐더러 우리 국회마저 그냥 묵과해 넘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지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제인가 자유중국 대만에 있어서의 일-중국인 사건 일본에 있어서의 저 유명한 「지라-드」 사건 같은 것은 그 단 한가지의 사건이 얼마나 광대한 규모로 그 국민을 자극케 하고 국론을 비등케 하며内外여론을 환기했던가를 상기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처지는 너무도 이 방면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너무도 무성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국민에게 정치인으로서 미안함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굳이 법적인 근거는 조치

하고라도 이 문제는 하나의 「휴머니즘」에 관한 인도상의 문제로도 도저히 그냥 간과될 수는 없다고 본의원은 굳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전외국군이 군령위배상의 문제는 별도로 친다하더라도 그 이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마땅히 대한민국의 범주 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은 일종 국제공법상의 상의이요 인도주의의 본바탕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셋째의 이유는 「UN」 군의 보상문제입니다. 외국군대가 타국에 주둔할 경우 그가 사용하는 일체의 자원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하느냐 아니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한 마디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으로서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생명중의 하나 그 것은 두 말할 것 없이 개인사유재산 국가간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유럽을 위시해서 그밖에 아프리카, 중동아세아에 걸쳐서 거의 세계적인 규모로 수십 개국에 대하여 일정한 협정에 미국은 그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NATO상하제국과 일본을 위시한 기타국가에 있어서 거의 그 예에 빠짐이 없이 이십여 개국에 걸쳐 행정협정안의 조약을 맺어 가지고 모든 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에 주둔하였던 모든 국가의 예에 있어서까지 전후 그 보상금을 지원하였었고 심지어는 일본같은 예에 있어서는 본토점령의 대가는 두말할 나위조차 없고 재 미군정하에 있는 오끼나와에 대하여 그 지대가 헐하다는 것을 이유로 그 인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 이하 생략 -

2) 한미행정협정체결촉구에 관한 결의안

(국회 본회의 제5대 제38회 제34차 민의원 1961. 3. 2. 이충환의원)

한미간에 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그 긴급한 필요성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터이고 특히 지난 28일 민의원 참의원에서 양해각서인 부조건을 붙여서 비준에 동의해 준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도 행정협정의 체결

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심지어는 한미경제기술협정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 이 한미간에 행정협정을 체결하므로 인해서 이 한미행정협정 효력발생과 똑같은 날짜에 경제기술원조협정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국내의 절대다수의 의견과 또 국민 여러분의 여론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미행정협정은 이제 새삼스러이 우리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결의한다느니 보다는 이미 단기 4286년 8월 8일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공동성명서에 의거해서 한미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가지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것이 이 공동성명서에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8년에 가까운 세월이 경과하도록 이 행정협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미양국간에 논의된 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미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한 실무자간에 검토는 있었을망정 정치적으로 이 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한미간에 정치적인 협상이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리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한미행정협정이 조속히 체결되지 않는 그 중요원인이 우리 한국정부 보다도 미측 태도에 의해서 행정협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럽기가 짙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일례를 들자며는 과거 이승만 독재치하에 있어서 한국의 사법권마저 행정부에 존속되어 있어 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구실 삼아 가지고 한미간에 행정협정이 오늘날까지 체결되지 않고 또 미국측에서 이것을 구실 삼아서 오늘날 까지 지연해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적에 4·19혁명을 거쳐서 제2공화국이 탄생되고 사법부의 권위와 위신을 완전히 회복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미측이 설사 이러한 말을 이러한 구실을 한다고 해서 행정협정의 체결을 지연시킬 하등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정부로 하여금 조속히 한미간에 행정협정을 체결해서 이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또 미국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경제기술원조협정에 있어서의 「매카나기」 대사의 성명

을 실지로 이것을 구현시키고 또 세간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미국 정부도 한미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되는 데 있어서 전적인 협조가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이 우리정부로 하여금 조속히 체결하도록 우리 국회로서는 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3) 한미행정협정 체결촉구결의안

(제5대 참의원외무국방위원회 제38회 1961. 3. 23)

(1) 염민영위원

한미행정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권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가령 지금 일본정부의 그 형사재판권에 관한 행정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암만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던 「지라드」 사건을 계기로 해서도 그것이 되어서 주한미군 형사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경우에 행정협정은 상당한 암초에 걸릴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본 것을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그 형사재판권을 빼고 나머지 부분 즉, 미군부대에서 일하고 있는 노무자의 노임문제라든지 이런데서는 타협여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재판권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양보만 한다면 다른 부분은 그 쪽에서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수차 얘기한 바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 문제는 없고 미군부대에서 일하고 있는 노무자의 임금문제가 주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행정협상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교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행정협상안이라고 하는 것은 민의원에서 먼저 결의를 했으니 참의원에서는 그대로 따라나가야지 기본적으로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당국에 맡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질수가 없어서 민의원에서 기본적 내용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한미행

정협정을 구한다 이렇게 했으니 내용은 기본적으로 언급이 안되어 있으니
그러한 미묘한 사정이 있으니 우리도 그런 형식으로 건의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2) 이교선의원

이위원 말씀과 같이 미국 사람이 이것을 맷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행정부에서 행정부 단독으로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할 것도 없
지만 원치 않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필요하고 형사문제까지
도 사안은 넣어 가지고 해야될 것입니다.

독립국가로서 있어 가지고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수치거든요

(3) 엄민영위원

물론 이것은 좋으니까 더 개선할 것 없이 그냥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
습니다.

(4) 여운홍위원

작년 겨울에 미국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희가 행정협정을 체결할 것
을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행정협정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걷어
가지고 가는 것이 바땅하지 않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
지 미국정부가 강경하지 않느냐...

(5) 이범석위원

나 하나 생각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면 좌익계열에서 특히 공산당...
이미 남침되어있는 간첩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동시
킬 가능성이 있어요

(6) 위원장 최희송

미국의 의도를 볼 것 같으면 내가 들은 얘기를 하면 일대일의 완전한
국가체계가 이루어졌다면 문제없는 것인데 지금 이범석위원 말씀하신 바
와 같이 현재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자주성을 완전히 발
휘할 수 없을 형태일뿐더러 휴전 상태였으니까 이것은 현지사령관의 의도
를 참고해서 할 것이다. 그리고 국무성에서는 그것은 손을 띠고 우리는
할 의도는 있지만 국방성의 의도와 현지사령관의 의도라는 것은 우리가
존중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넘긴다고 하거던요

그러니까 지금 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의사가 이것을 원한다는 형식으로 결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의없읍니다」하는이 많음) - 이하생략 -

4) 대한민국 법률안 (국회본회의 제6대 제11차 1967. 2. 6)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
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
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로서 법으로서는 첫째 이 법은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
정의 시행에 따라 미합중국군대에 공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소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국방부당국자의 설명과 충분한 증언을 듣고 심사한 결과
를 말씀 드리면 제59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안한
원안에 대하여 별다른 수정을 가하지 않고 다만 법문중 일부 문구를 수정

하였으며 부칙중에서 원안에 「이 법은 협정의 발효일로서」 된 것을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수정하였고 다음 제2항 경과조치중에서 자구와 체제를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법 시행당시 미합중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이 법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 재산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환 또는 대여의 절차를 행하여야 한다」로 된 것을 「이 법 시행 당시 합중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이법에 의하여 관리환 또는 대여된 것으로 보고 이 법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안(국회본회의 제6대 제11차 1967. 2. 6)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우리 나라에서의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실시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에 제출한 법률안으로서 재경위원회에서는 1월27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정부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용어와 법체계상 불비한 점등에 수정을 가하여 국회법 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늘 상정을 보게된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우리 나라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관세당국이 집행하고 있는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협력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현행 국내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따로 입법조치를 요하는 까닭에 협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특례가 필요하므로 본 법률을

제정케 되는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첫째, 군 공용선과 군 공용기의 출입항 절차를 상선과 구별하여 협정에 의한 관세검사의 면제를 받는 물품과 여객에 대한 취지를 명확히 하도록 용어의 수정을 가하였고 둘째,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고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미군 미군속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면세특권자라는 용어의 정의를 하였거나 이러한 면세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는 비면세특권자라 한 용어의 정의는 좋지 못하므로 이를 면세대상자 또는 비면세대상자라고 평범한 용어로 수정하였으며 셋째로, 군인 군속 등의 개인용품 유출을 규정하기 위하여 그 강도에 있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없이 처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있어서 밀수범과 밀수범에 대한 관세법의 처벌규정의 준용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6) 대한민국 동의안(국회본회의 제6대 제60회 제4차 1967. 3. 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1967년 2월 23일자로 정부가 제출한 본협정의 비준동의안은 동월 28일에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바 외무위원회는 주한미국군대에 근무하는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라는 점과 이번 제60회 국회의 기일자의 단기성에 비추어 본협정의 비준동의안이 회부된 즉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본 한국노무단 지위에 관한 협정에는 노동관계에 대한 중요제사항외에 국방부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무위원회는 심사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는 외무부 국방부 및 보건사회부의 각부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관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보건사회위원회와의 연설회의를 열고 먼저 외무부로부터는 동 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한편 보건사회부로부터는 주한미군 군대에 근무하는 한국노무단에 대한 현황을 청취한 다음에 동 협정 내용

과 관련사항을 다각도로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진솔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67년3월3일 아침에 개최한 제2차 외무위원회에서 본 한국 노무단 지위에 관한협정의 비준동의안을 이의 없이 동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이하생략 -

2. SOFA 1차 개정시기의 논의

1)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中

(국회본회의 제13대 제144회 제8차 1988. 10 .28)

(1) 김종식의원(신민주공화당소속) 질문

한·미 관계에 있어서 군사적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한미군의 철수문제, 군의 작전권 이양문제, 핵무기 배치문제, 방위비 부담문제 등이 국민적 관심 사항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 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현 정부는 과거정권의 구태의연한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의 해결을 위한 국방부장관의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행 한·미행정협정은 지난 1966년 7월에 체결되어 현재까지 거의 수정없이 22년 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한국영토대의 무제한적인 기지사용, 한국이 지불하는 미군주둔 방위비문제, 미군의 한국인 관련 사항에 대한 재판권의 미국귀속 등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행정협정으로 인하여 주권국가로서의 체면과 권위를 외면하고 있어 반미감정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협정의 개정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생략 -

(2) 국방부장관 답변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행정협정은 1966년에 체결이 되어서 이제 20년을 넘어 섰습니다. 체결 당시에는 미국이 다른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나라와 맺고 있던 협정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미군의 지위라든가 기지의 사용이라든가 특히 재판권관할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이와 같은 협정이 미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서 재교섭에 의해서 개정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동안 정부로서는 가급적이면 운영의 묘를 기해 오면서 미군의 지위를 한쪽으로는 보장해 주면서 또 한쪽으로는 우리의 국가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이 협정이 체결된지 이제 20년이나 지났고 또 그간에 한·미간의 관계 또 우리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여론 또 지금 김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 미측과 한·미행정 협정을 보다 양측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는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미 그와 같은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하생략 -

(3) 박정수의원(민주정의당) 질문

다음은 한·미 관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대한 못마땅한 감정이나 쌓였던 수모감이 있긴 하지만 한·미 동맹관계는 우리의 안정과 번영을 지켜준 기둥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에 따라 한·미 안보체제도 재검토해야 할 단계에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당면문제는 어떻게 하면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한반도평화와 동북아 세력균형유지를 위하여 상호협력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있으며 또 이러한 한·미 안보체제가 소련과 북한을 위협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문제입니다. 동시에 한·미 관계에 있어서 주한미군철수문제, 작전권 이양 문제, 군비축소문제, 비핵지대화문제, 미국의 대한방위비분담문제, 한·미 행정협정 개선문제 등 일련의 현안문제들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외무장관으로부터 정부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는 정부의 태도를 분명히 밝힐 단계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본인 생각은 한반도에 상존하는 현실적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미군주둔은 불가피하다고 보며 어떠한 확고한 보장이나 사전조치의 성립이 전에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것은 또 한번 전쟁가능성을 고조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대미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올림픽이후 대외적으로 세계 제17대 무역국으로 성장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민주화가 하나의 가능성으로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역량에 비추어 지금은 과거 종속적이었던 관계를 떠나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미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등하고 동반자적인 대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한·미 행정협정을 재조정하여 우리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주한 미군은 년간 12억불에 해당하는 토지 및 시설비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군 기지 및 시설제공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현재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군사문제는 마치 북한과 미국간의 문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간에 군사회담이 진행될 경우 남한이 회담당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에 있는 작전지휘권을 한국에 이양시킬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외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하생략 -

(4) 외무부장관 답변

작전지휘권문제 ~~기타는~~ 국방부장관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한미군문제는 아직은 한반도에 긴장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우리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요소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관점에서 현재 미국과 견고한 상호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긴장상태가 상당한 정도로 완화가 되고 또 전쟁위협이 상당한 정도로 사라지게 될 것 같으면 이 주한미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나 또

혹은 미국정부도 유연성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고려를 할 시기나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생략-

(5) 국방부장관 답변

먼저 대미 의존적인 한·미 관계라고 지적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우리는 장비, 탄약은 물론 의·식·주문제까지도 자체 해결치 못할 정도로 국력이 약했으며 또 군사력도 현대화되지 못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현격히 증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미 군사관계의 성격도 크게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즉 과거 일방적으로 지원 받던 관계에서 상호보완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의 안보를 독자적으로 지켜나갈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엄청난 재원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지휘, 통제, 통신체계 등 조기경보능력 면에서는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미국의 계속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미국과 소련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단독방위에 따른 막대한 군비의 지출이 어렵고 또 점차 고도 정밀화 되어가고 있는 군사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과학기술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군사동맹관계를 맺는 등 공동방위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미 군사관계도 이러한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완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또 앞으로 도래할 태평양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물론 군사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미 관계는 앞으로 더욱 더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상호의존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게 될 것이며 이것은 바로 주권국가간의 대등한 위치에서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성숙되어 간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하생략 -

2) 외무통일위원회(제13대 제150회 제2차 1990. 7. 9)

(1) 이상희 의원

저는 SOFA문제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SOFA협정, 즉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된 것은 66년이고 그것이 발효되니 것은 6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약 3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AFKN문제입니다. AFKN이 라디오전파를 발사한 것은 1950년이고 텔레지변전파를 발사한 것은 5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50년은 한국동란이 발발한 해이고 57년은 우리나라에 아직도 텔레비전방송이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66년에 SOFA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단지 한국정부와 미군간에 메모형식의 협정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귀중한 VHF채널을 미군이 사용해왔고 67년에 와서 SOFA협정 3조2항의 내용을 잠깐 보면 전기통신의 모든 문제는 두 나라 정부의 약정에 따라 최대의 조정과 협력의 정신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물론 영어로 이야기하면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미군이 우리나라 VHF채널 중 가장 로우채널 이것이 전통적입니다 마는 로우채널이 하이채널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따지고 보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가령 최근에 방송법개정안을 지금 상정해놓고 큰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채널중에 가장 좋은 텔레비전채널을 그것도 주한미군에게 단 한 조항의 협정조항에 의해서 그대로 팽개쳐놓고 몇십년간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내왔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참고삼아 세계경향을 말씀드리면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주독미군을 위한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ARD라는 연방채널 독일연방채널의

프로그램 통제를 100%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VHF채널이 아니고 UHF채널입니다. 일본에도 오끼나와에 있는데 이것은 케이블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령 한미간의 관계를 보면 수퍼 301조는 고사하고 무역역조다 뭐 등등해서 매년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시비란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하여튼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지적소유권까지 청구를 해서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있고 별 것 다 공개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고 또 주한미군의 유지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이전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 이야기는 한미간의 관계에 지금보다도 더 마찰이 가는 문제를 제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의 발상법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와같은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군에게 VHF채널을 우리가 대여를 할 때 우리의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당시 미군은 우리의 구세주였습니다. 미군과 군속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취지하에서 VHF채널을 대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정보화시대에 가급적 채널을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게 하는 것이 개방시대의 세계적인 분위기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것과 이 문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VHF채널을 우리가 무상으로 미군에게 대여한다는 것은 첫째는 국가주권에 대한 큰 침해가 되는 것이고 국가위신에 대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이것을 돈으로 따지면 도저히 환산도 못합니다. 가령 용산기지 이전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하는 것은 계산하는 주체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1조원에서 2조원 이렇게 정부당국에서 발표한 것이 있어요 물론 외무부는 아닙니다마는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200억불까지 됩니다. 물론 기지사용료 임대료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산기지 이전하는데까지 우리가 그만한 출혈을 하고 또 자진

담당을 하고 있고 주한미군 유지비라고 그럴까요. 방위비까지 부담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는 좀 철저히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해결방법을 제시하면 지금 당장 미국방송을 폐지하라 AFKN을 철수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 채널 하나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UHF로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케이블로 보내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있고 송출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가 학교에 있을 때부터 AFKN국장, 주로 대령인데 대령 보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느냐 하면 정부가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했거나 과거의 사고방식대로 이 문제를 생각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없었던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대사관에서도 이 모순과 불합리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파력은 돈으로 따지면 도저히 환산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식의 발상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사는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국가체면 면에서 보더라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미간에 마찰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미대사관측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산기지이전문제 이것이 SOFA협정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지난 6월25일 정식으로 한미간에 합의각서를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집권당에서 공약을 한 것입니다. 용산기지를 이전하고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공약을 했더라도 상황조건이 달라지면 과거에 했던 공약을 얼마든지 시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테탕트시대가 아니예요. 동서화해무드가 조성된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훨씬 더 국제질서 자체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군축회담이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 남북간의 군사회담등을 통해서 크게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군이 지금 철수하기를 바라는 입장도 아니고 또 덮어놓고 북한이 요구하는대로 군축에 응해야 된다는 입장도 분명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철군은 시간문제예요. 언젠가 철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세를 거역할 수가 없어요. 김일성이가 완전히 정신병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당장 6.25와 같은 전쟁도발을 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연차적으로 미군 감축이 되게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핵무기도 철수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가면 갈수록 줄면 줄었지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공약을 했다해서 얼마나 드는지 발표에 의하면 1조원 2조원 설이 있는데, 이미 후보지를 정해놓고도 땅값 폭등 때문에 발표를 안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반드시 꼭 지금 이전을 서둘러야 되느냐 하는 문제 지금 우리가 40년 이상 견디고 참아왔습니다. 어느 쪽이 더 정말 국가이익에 부합되느냐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한 너무 서두를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합의 각서도 교환도 했습니다마는 이제도 외무부가 주관을 하는 것 같지 않고 국방부가 주관하고 외무부가 협조하는 형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상황조건 변화에 따라서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SOFA문제인데 우리가 한미행정협정 중에 가장 비난의 소지가 있는 것이 형사재판권문제입니다.

통계를 보면 1980년에서 89년까지 우리측이 1차적인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 주한미군범죄는 1만2,701건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따지면 범법행위를 한 미군 미군 속 그 가족까지 다지면 1만3,928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1차적인 형사재판권은 분명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한 퍼센트는 0.5%도 채 안돼요. 1만 2,701건 중에 61건뿐입니다. 이 61건도 거의 행사를 했는지 마는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물론 이 많은 사건을 우리 법원의 능력으로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권국가예요. 주권국가면 이렇게 많은 범죄행위가 있었고 사건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1차적으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 이것이예요.

주권국가로서의 체통을 지키기 위해서도 상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무엇인가 과거하고 달라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강간사건도 있고 살인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거의 전부 다 형사재판권을 우리가 미국쪽에 이양을 했어요. 협정에 의해서 합의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이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말 한미간의 우호관계를 재정립하는 디딤돌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 권현성 위원

한미행정협정 SOFA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판관할권 행사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만인이 공감대를 형성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989년 2월 145회 임시국회에서 SOFA의 우리측이 갖는 부당성을 지적했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떻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관할권 행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재판관할권 행사가 물론 외무부 자체내의 노력부족으로서 행사 안되고 있다고 만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 자신 역시 우리 법원이라든가 검찰측의 관할권 포기에 따른 관할권 행사가 타국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마는 우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NATO 국가들의 재판관할권 행사를 보더라도 저의 통계에 의하면 32%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장 인접한 주변국가인 일본도 23%로 나와 있고 필리핀 또한 2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정을 촉구한 것이 89년 2월이고 현재가 90년 7월이면 약 1년 5개월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이것이 시정 안되어 있다는 사실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0.7%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NATO 국가 32% 일본 23% 필리핀 21%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과 외무부의 견해는 어떤지 명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3) 박찬종 위원

제 생각에는 이번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한미합의는 보기에 따라서는 불형평을 지나쳐서 굴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한미군 3단계 감축년도가 96년입니다. 그런데 96년까지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를 중부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합의를 해준 미군주둔군의 위상이 앞으로 5, 6년간에 변화되는 것이 예견되는 이런 시점에서 미국의 일방적 그들의 위상과 이해추구에 한국정부가 쉽게 양보해버린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지이전비용을 아까 이상희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적게는 1조 원에서 많게는 3조 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 비용의 산출근거는 어떤 것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고 우리는 필리핀의 경우에 수백만 해군기지와 클라크공군기지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사연은 전혀 다르다하더라도 필리핀 정부가 기지사용료를 매년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측과 협상함에 있어서 인상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테이블에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까지 일방적으로 필리핀 정부의 안을 미국이 받아들이도록 이런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쉽게 항복해 버리는데 결국 이것

을 우리정부가 기본적으로 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지금 논의가 있었던 한미행정협정 등의 그 골격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를 보면 「상호적 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 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배치에 한국정부의 간여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53년 후 전직후의 일이니까 이러한 조약이 있었던 것은 현실이었고, 또 과거의 일입니다.

또 66년 체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2조에 보면 「군사문제와 관련해서 국토이용권을 한국은 전면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기본조약의 기본골격이 유지되는 한 우리 이 자리에서 용산기지이전에 따른 비용 전액을 한국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을 비난하고 비판해 봐야 그 것은 결국 한계가 있고 비난이나 비판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조약은 어제 오늘 냉전체제도 바뀌고 지금 통일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국가입지도 바꾸게 되어 있는 이 때에 이 두 조약을 기초로 해서 군사작전권은 미군사령부에게 있다 또 이번의 용산기지이전비용을 우리 정부가 전액 부담했다 이런 모든 불형평하고 굴욕적인 이런 조약과 협정내용들이 바로 오늘 이 정권을 공격하는 비판세력들에게 종속이론 신식민지이론을 제공하고 이 문제를 타파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현정권의 노력에 대해서 회의시하는 시각이 바로 이런한 태도에도 연유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형평 조약과 협정을 개정하지 않고 민족통일의 주도적 역할을 우리 정부가 수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대단히 어색하게 됩니다.

통일론의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기본조약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4) 권현성위원

아까 한꺼번에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시할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은 당 위원의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대해서는 이것은 비용이 들더라도 주권 국가의 제1도시 행정도시의 도심지에 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체면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의 도심지에 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민족자존심의 문제 세 번째의 반미감정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의 기지를 서울에서 이전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소신 있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문동환위원

이제 여기서 제시된 모든 것을 총괄해 본다고 할 때 AFKN문제라든지 기지문제라든지 혹은 우리 재판권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을 볼 때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양보 누가 봐도 어처구니없는 굴욕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제 권현성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벌써 오래전부터 이것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이런 굴욕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하는 것을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6) 외무부장관 최호중

여러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희위원님께서 AFKN 또 위성방송에 의한 누출문제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대미 대일 협상을 해 나갈 길을 일깨워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대미 대일 교섭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AFKN채널문제에 대해서 저 자신은 전문적인 지식도 없습니다마는 이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미 이것이 현실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현재 교섭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한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관리와 외국 방송의 문화적 영향 등을 고려 지난 88년 8월부터 서울지역 AFKN-TV채널 변경을 포함한 미군방송방식 및 라디오 주파수 재조정 문제를 제기 양국 외교경로를 통하여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79년이래 전파특성이 좋은 VHF채널은 한국측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미측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그간 미측은 TV -이하생략-

다음으로 SOFA개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미국인의 범죄에 관한 우리 나라의 재판관할권 행사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SOFA의 여러 가지 협정이라든가 관계문서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데 착안을 해서 이미 지난 88년부터 이 문제의 개정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교섭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말씀드라면 형사관할권 행사에 있어서 공무집행중이냐 여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한국측에 이의제기절차를 쉽게 하기로 하고 한국측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의 여러 가지 범죄 말하자면 음주운전이라든가 뺑소니 기타 마약사범들을 포함시켜서 우리의 관할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고 또 한국 당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현저하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실무적인 의견접근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 당국이 군기유지필요 그리고 채판·징계조치의 효율성을 인정해서 이에 대한 관할권을 앞으로도 양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일본 NATO제국이 미국과 체결하고 있는 주둔군 지위 협정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관행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와같은 문서관할권 집행에 있어서 법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라든가 SOFA체제 운영을 개선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간의 각종 현안의 원만한 해결이 양국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갖도록 하는데 긴요하다는 인식을 미측과 같이 하고 있고 또 범인식 문화적 차이를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함으로써 양국 국민간의 감정적인 마찰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양국 정부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규정체제를 개선하는 일방, 금번 재검토 작업이 종결되는 대로 양측 실무자들간에 운영되는 SOFA합동위를 적극 활성화시켜 SOFA조항을 보다 융통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제점을 해소시키도록 SOFA 운영체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SOFA협정 개정문제는 현재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한 두달내에는 그러한 실무협의가 원만히 종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러한 합의에 도달하는데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제로 저희들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한 그 순간에 대해서 통계를 어떻게 잡느냐 또 어떻게 이것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81년부터 89년까지 미군 주둔으로 인해서 발생한 총1만4,987건중 2,2278건 즉 약15%에 대해서 한국당국이 관할권을 행사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찬종위원님께서 이제 한미간의 여러 가지 방위조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난 50년대에 체결된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한미관계도 달라졌고 국제환경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조약자체를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한미간에 안보협의회의라고 불리우는 국방장관회의

도 있고 또 그 밑에 실무적인 여러 가지 협의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를 통해서 현 조약이나 협정하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합의해 도달할 수 있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방 위조약자체가 검토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그러한 조약의 개정을 제의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도 양국 국방장관회의 라든가 기타 실무자급 회의에서 한미간에 존재하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치중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7) 이상희위원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마디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SOFA 협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것이 66년도에 체결이 되고 67년도에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 한국의 국내 사정과 또 60년대가 전체적으로 보면 미소를 중심으로 한 양극화 현상이 이루어졌던 시대이고 우리나라가 군사, 외교적으로 미국의 치마폭속에 싸여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굴욕적인 조약이라고 해도 과연이 아닌 그런 불평등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사항만 지적을 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미 주한 미군이 AFKN을 지금 VHF송출방법에서 UHF송출방법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오래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곧 한다 한다 한 것이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이것이 언제가서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케이블은 너무 시설투자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그 막대한 시설 경비를 부담해 가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대기 공간에 전파를 발사하고 있는 형태인데 거기에서 케이블을 통한 송출방법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UHF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수신상태가 상당히 나빠집니다. 따라서 난시청지역이 많아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테나 방법을 통해서 수신상태

를 개선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다 재정적으로 상당히 지출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지금 SOFA협정에 따르면 미군 속 미군가족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 시설 통신 교통 등등 모든 편의를 한국이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경비도 한국측이 부담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는 포함이 안되어 있지만 묵시적으로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포함해서 언제까지 그러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담을 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SOFA협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한미간에 회담이 이루어 진 것이 벌써 7,8년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결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의 입장을 좀더 떳떳하게 밝히고 우리의 주장을 좀더 논리적으로 펴다면 이 SOFA협정문제는 상당부분 개정이 되었을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예비회담을 하는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측에서 송출방법을 절대로 VHF방법에서 UHF방법으로 안 바꾸겠다는 것도 아니고 형사재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협정하고 있는 SOFA협정을 그냥 두고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SOFA협정개정을 위해서 한미간에 회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과거와 같은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8) 박찬종위원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대단히 잘한 것인지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 중에서 상당수가 굴욕적이라고 보는 것은 그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외무장관이시니까 장관님께서 정확히 말할 입장에 계신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용 산정에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비용을 가령 반분으로 하자고 우리 정부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액을 우리가 부담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책임있는 사람이 답변한 바 아무도 없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전액을 우리 한국측이 부담한다 그러니 굴욕적이다 이것을 제가 물은 것이고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에 있었던 조약입니다. 모든 조약과 체결에는 사정변경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것도 알타체제의 산물 아닙니까?

한국전쟁이 결국 그로 인해서 분단이 되었고 우리끼리 서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였습니다. 알타체제의 중요한 한축인 구라파에서도 지금 축이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장관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다 나 그렇게 생각한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역시 그 답변은 미흡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조약은 그대로 두고 그 조약에 따른 무슨 국방장관회의나 안보회의나 뭐 이런데서 조약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면서 필요성이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 조약이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37년 전의 사정변경의 주요한 축인 알타체제를 구축한 사람들 쪽에서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하는 사람들 쪽에서 완전히 한 귀퉁이가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 변화에 우리가 응해서 그 얘기마저도 미국하고 꺼내지 못한다고 하면 주권국가의 자존심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9) 외무부장관 최호중

아까 이상희위원님께서 AFKN을 UHF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

가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215만불 소여되는 것으로 지금 대략적인 산출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 나라에서 변경요청을 한 관계로 우리측에서 부담하는 이러한 문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찬종위원께서 용산기지이전문제에 관해서 다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용산기지이전의 기본원칙에 관해서는 한미양국간에 지난 6월 25일 합의각서에 서명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른 이전비용 분담원칙, 장소 등 세부사항은 양국 국방당국 실무자간에 좀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기본계획에 맞도록 잘 추진이 되어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금번 합의각서에서 이전되는 기지의 규모는 주한미군 조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한미군이 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전될 기지의 규모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이것이 조정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산기지이전비용 중 토지제공은 SOFA협정에 따라서 기존 용산기지의 부지를 저희들이 반환 받고 대신에 토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SOFA조항은 미국 서독간 또 미국 일본간 협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평등한 조항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양국 실무자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찬종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위조약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조약을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 조약의 개정은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국방장관회담이라든가 그 외에 구체적인 협의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면서 현 상황이 그것 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조약개정을 검토할 단계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 SOFA 2차 개정이후 현재까지 논의

1) 정치에 관한 질문 中

(국회본회의 제14대 제172회 제5차 1995. 2. 27)

(1) 유성환의원 질문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미행정협정은 91년 개정이후에도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제22조 9항인 검찰의 독자항소 금지 조항과 제22조 5항의 미군피의자에 대한 구금 인도요청 및 조항 등 불평등 조항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우리와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국가의 체면이 있습니다. 정부측의 입장은 어떤지 총리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생략 -

(2) 이홍구국무총리 답변

끝으로 현 한·미행정협정 이른바 SOFA의 개정문제에 관해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91년 2월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통해 여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우리의 주체적 권리행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 SOFA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필요 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협정을 재개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하생략 -

2)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中

(국회본회의 제14대 제172회 제15차 1995. 2. 27)

(1) 김진영의원(자유민주연합) 질문

주한미군은 한국이 세계 어느 곳에 비교해 볼 때 미군의 범죄 지상천국이라고 모 잡지에 타이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미행정협정이 일방적

으로 불평등한 관계대로 처리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건으로 92년 캐네스 마클 이병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등 90년에서부터 92년8월의 주한미군 범죄수 2,870건인데 재판권행사는 37명으로 1.3%에 불과합니다.

국가 권위와 국민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미행정협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행정협정에 의해 한국노동법상의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부당해고, 부당처우 등을 감수해 왔고 한국인 근로자들의 쟁의권은 온갖 절차규정으로 인해 껍데기화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주둔군지위협정상 노무조항도 최소한 한국노동법 기준으로 보장되도록 개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생략-

(2) 공노명외무부장관 답변

정부는 그간 주한미군 당국이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제반 노동규정을 우리 노동관계법령과 실질적으로 합치시킴으로써 한국인 고용원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온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91년 SOFA개정 이후 해고된 이러한 징계처분 등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개인소청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고용원들의 제반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필요시 관련 SOFA규정의 개정도 검토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 한국 국민들의 고용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 이하생략 -

(3) 김충조의원 질문

한미행정협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한미행정협정의 형사재판관할권에 있어서 우리기 재판권을 행사할 형사사건의 미군피의자에 대해 최종판결이 날때

까지 미군측에서 구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과 군속,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공무상의 범죄인 경우에는 미군측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상의 범죄냐 아니냐 하는 판단도 미군측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NATO협정은 똑같은 조문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제1차적 재판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생략 -

(4) 이홍구국무총리 답변

현행 한미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 내용은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속수사권 문제,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우리 노동법규의 적용문제, 환경관련조항 적용문제 등에 있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지적되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한·미 우호동맹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동 협정의 불합리한 규정이나 운영방식을 보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개정 필요성을 미국측에 이미 제기한 바 있습니다. - 이하생략 -

2) 통일외무위원회(제14대 제173회 제1차 1995. 03. 17)

(1) 이우정위원 질문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류로 질의를 하고 서류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로 미국범죄에 관한 것이고 한미행정협정을 다시 개정할 의사는 없으신가 하는 것이었는데 고친지 얼마 안되어서 고치기 어렵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사저널 3월호에 난 고삐 없는 주한미군 범죄 수사재판 사각지대 9개월간 폭행 시달린 여성 보호받지 못한 인권절규 등 여기서 미군이 얼마나 무법지대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범죄를 밥먹듯이 하는가 하는 사례모음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을 보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주한미군범죄문제대책위원회가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모은 미군범죄의 사례들이 상당히 두꺼운 자료로 나와 있는데 보셨는지 그리고 이런 자료를 보시고도 아직도 한미행정협정이 67년 것은 아주 말도 안되는 식민지사관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행정협정이었지만 90년에 많이 고쳐져서 좋아졌지만 아직도 상당히 우리에게 불리한 불평등조항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 답변은 고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치기 어렵다는 답변을 제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한국인의 인권사각지대 보호받을 길없는 범죄가 자꾸 일어나는데도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미행정협정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검토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래 신문에 난 것인데 미국에서 우리 나라에 있는 재산 우리에게 임차료를 내야 할 것을 안내고 여섯 군데인가를 쓰고 있는 것이 신문에 났고 액수를 따지면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문화원하고 구 경기여고 자리하고 바꾸어서 거기에 대사관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용도... 형질변경을 해 달라 그리고 그 대사관 직원들이 있는 거기도 고도제한을 해제해 주시오 해 가지고 마치 자기네 나라에서 하는 식의 이런 것을 우리 정부에 강요해 온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것을 거절했다는 그런 신문보도는 보았지만 확실히 우리 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그런 주문이 들어 올 적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답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노명외무부장관 답변

다음 이우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미군범죄사례를 인용을 하시면서 행정협정의 개정용의에 대해서 정부입장을 물으신 바가 있으십니다.

저희 정부는 지난 91년 2월에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개정을 통해서 여러 문제점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체적인 권리행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때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었고 또한

행정협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합동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미측과 긴밀히 협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저희들은 필요한 때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SOFA의 운영현황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운영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군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 된 일이고 이것은 최근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 일반의 경향이 이러해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꼭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다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SOFA운영을 통해서 지난 91년 개정된 현행규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편 또 이 협정이 한·미 우호협력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3) 이우정위원 질문

법조문의 개정을 요구할 의사는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까? 조문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몇 번 지적했습니다. 22조 몇 항 23조 몇 항 그 조문 때문에 이렇게 당한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그냥 운영만 잘하면 된다는 장관 대답은 말이 안 됩니다.

(4) 공노명외무부장관 답변

적절한 시기에 개정의 필요성이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이우정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염려하시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5) 이우정위원 질문

개정을 검토해 주세요. 조문이 그런데 무슨 재주가 있어서 운영을 잘 해요?

(6) 공노명외무부장관 답변

법이라는 것은 운영의 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미국의 한국내 무상사용재산문제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94년 3월 한·미 양측이 미결재산문제의 초기 해결의 필요성을 서로 인식을 하고 이 문제해결을 위한 비공식실무협의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무협의가 진행중입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아직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이라서 언론 보도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언론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아직 이른 단계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제14대 1995. 9. 25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1) 정상천위원(민자당) 질문

그 다음에 한·미행정협정 소위 SOFA 불평등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문제가 되지만 한·미 양국간에 있어서 그 동안 SOFA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 듣고 있기에는 금년도에 韓·美 SOFA관계에 여러 가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개정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개정된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연내에 어떤 내용으로 앞으로 협의를 하고 개정이 될 것인지? 물론 국방부장관 소관은 아니지만 미군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이니까 정부측을 대표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제가 답변을 구하는 것은 지난번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외국선박들이 여러 가지 하역능력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항 같은데서는 며칠동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항만시설을 우리 민간하고 정부가 함께 쓰기고 합의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지역적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

습니다마는 현재 부산 부전동에 하야리아부대라고 하는 미군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산시 당국에서는 앞으로 2002년에 개최되는 아세안게임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곳에다가 선수촌을 건립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국방당국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또 만일 된다면 2002년 아세안게임과 관련해 가지고 과연 이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겠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도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 없으면 개별적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분명히 하나 중요한 문제는 미 하야리아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군사시설은 도심지 안에 수많은 면적을 차지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부산시민들의 민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2) 이양호국방부장관 답변

따라서 한-미연합 전역에 의한 전쟁억제로 지역안정을 추구하면서 경제성장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적정규모의 방위비 분담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독일 등 타국과 비교할 때 우리와 그들의 안보상황과 경제규모가 다르고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쟁 수는 없지만 안보상황이 우리보다 덜 심각한 일본, 독일도 현재 상당액의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창성위원님의 기지사용료 징수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토지공여는 우리 안보여건상 미국 주둔을 필요로 하는 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봅니다. 외국인이 자국내에 주둔하는 한 어느 나라나 SOFA협정 및 그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지임대료를 부과하다가 결국 미군이 철수해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제반 안보상황이 필리핀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미군주둔이 필요한 현 상황하에서 주한미군의 기지사용료를 부과하기는 곤란하

다고 봅니다.

이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93년 4월 상원 청문회에서 애스핀 전 미장관이 증언한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배경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90년대초 런 워너 법안에 의한 동아시아 전략구상 소위 이지개혁이 시행되어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감군 여론을 억제해야 했고 이를 위한 대미홍보 계획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지원에 관한 책자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대미홍보외교를 했던 것입니다.

애스핀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과 한국의 기여도를 인식시키기 위해 상기 내용을 의회에서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이 한국의 미국 지원비용이 세계 제1위라고 보도를 계속하자 미측은 구체적으로 재평가 작업을 하였고 최근 발간된 미 국방부 국방예산평가서에는 일본이 77%, 한국이 62%, 독일이 25%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94년 기준 일본은 직간접지원을 포함하여 48억弗, 우리는 20.6억Fr 독일이 27억Fr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대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난 91-95년간 원화발생 WBC 개념에 의해 분담을 지원해 왔으나 그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96년 이후 새로운 분담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측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걸맞는 상당액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가상승률과 아울러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현재 방위비중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는 고용원 인건비에 대한 지원률을 제고시키는 정도로 고려하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결과는 국회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천위원님께서 SOFA개정문제에 관한 정부의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전 전제하신대로 SOFA 개정검토에 관한 사항은 현재 외무부가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9월초에 외무부가 외교채널을 통해서 우리측의

개정 검토대상 조항, 개정방향을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측의 반응 및 평가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개정검토 내용은 대체로 가장 논란이 되는 형사재판권문제와 환경 및 노무관리 개선조항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추후 외교교섭경과를 보면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SOFA 개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아울러 SOFA 협정 개정문제로 인하여 한미 연합방위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3) 이철위원 질문

SOFA개정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조회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나요?

(4) 이양호국방부장관 답변

예.

(5) 이철위원 질문

국방부의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국방부가 외무부에 국방부의 의견으로는 SOFA의 여러 이러한 조항들은 이렇게 개정되어야 한다 하는 의견서가 나갔겠지요?

(6) 이양호국방부장관 답변

그 SOFA는 방위비분담문제, 사병들이 어떤 위반을 했을 때 공무중의 위반이라고 하면 미측이 일방적으로 재량권을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냐 공무가 아니냐 하는 판단을 현재는 미측이 일방적으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관련 사항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 이철위원 질문

국방부에서 외무부에 회신한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8) 이양호국방부장관 답변

다음은 미항만시설 공동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부산항의 극심한 체선, 체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1차로 미군부산항 제6부두의 65번 선석을 SOFA 협의절차에 의거 한미 공동사용하도록 협의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또한 2차로 부산항 제8부두의 미군시설을 한미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SOFA협의과제로 기승인되어 세부적인 합의각서 작성을 위한 이용시간, 출입자 보안문제, 수리 및 보수비용 등을 협의중에 있으며 10월중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군 하야리아 부대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 미군 하야리아 부대는 토지 약 16만평, 건물 439동으로 미 제19지원사령부 예하 군수지원부대이며, 그동안 부산시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시 올림픽선수촌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대이전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산하 용산사업단을 모체로 하여 부산시 실무팀과 공동으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이전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산정과 한미간 협상 및 협의각서 체결, 이전부지 매입 등 적극적인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中

(국회본회의 제14대 제177회 제7차 1995. 10. 20)

(1) 이세기의원(민자당) 질문

미군범죄와 관련 한미행정협정 개정 교섭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일본은 미군병사의 여학생 성추행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번 사과를 받았습니다. 마이어스 미군주둔군사령관, 멘데일 대령, 헤리 국방장관,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끝내는 클린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다섯 여섯 번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외무부장관! 우리는 윤금이양 살해사건을 비롯한 미군 범죄사건에 대하

여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우리 외무부는 미군범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대하십니까? 외무부가 어떻게 했길래 레이니 미국대사가 미군범죄사건을 우리 언론 탓으로 돌립니까?

- 이하생략 -

(2) 이시영외무부차관 답변

정부는 1967년 발효된 이후 지난 91년 1차 개정을 거쳐서 시행되어 온 현행의 SOFA 내용중의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차별적 요소를 아직 갖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과 뒷받침을 받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SOFA중에 문제되는 조항들의 개정을 위해서 현재 미측과 진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협의상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9월초에 SOFA개정을 위한 검토대상에 어떠한 조항들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개정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미측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현재 미측은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립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그 대답을 받아서 본격적인 협의가 개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협의과정에서 최근 널리 알려진 국민들의 여망을 충분히 고려해 넣으면서 오늘날의 변화된 상황은 물론 장래의 필요에도 맞도록 하고 아울러 여타 국가의 SOFA와 비교해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간 국회나 언론에서 누차 지적되어 왔고 SOFA개정의 핵심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군 피의자 신병 확보의 시점과 방안 등 형사재판권 관련문제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노무, 환경관련 조항 등도 아울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 이하생략 -

5)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中

(국회본회의 제15대 제185회 제9차 1997. 10. 25)

(1) 하경근의원(민주당) 질문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7차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SOFA협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995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사건 때 현지 미군사령관은 물론 몬데일 주일대사, 폐리 국방부장관,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끝내는 클린턴 대통령까지 정중한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신속하게 일본경찰에 넘겨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동두천에서 발생한 이기순 한국여인의 살해사건은 가해미군의 묵비권행사로 사건 자체가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인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무총리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4월 27일 당시 주한 레이니 미대사는 6월 15대 국회가 개원되기 전에 미-일협정과 유사한 수준의 한·미간 SOFA개정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왜 지금까지 지루하게 끌고 있습니까?

지연이유가 미국내의 사정이라 하는데 미국내의 사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주권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에게 다시 묻습니다.

제6공화국 말기에 양해각서로 합의된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촌 어느 나라의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습니까?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용산기지는 환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끊어진 동작대교의 물골을 없애야 합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에 외국군 기지가 있는 것이 상상이나 됩니까?

얼마전 일입니다. 서울시 청사 부지로 시당국이 국방부 옆의 5만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안보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책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하물며 90만평에 이르는 용산기지내에는 미대사관 직원 숙소가 있으며 공여비 한 푼도 내지 않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족자존의 차원에서 반성이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이하생략-

(2) 고건국무총리 답변

다음 SOFA협정 개정과 관련해서 작년 6월 동두천에서 발생한 이기순 여인 살해사건의 처리내용 그리고 SOFA개정 협상의 지연사유와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95년 11월 이후 형사재판권문제를 비롯해서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우리 나라 근로자의 권리보호문제, 주한미군기지 환경보호문제 등에 대하여 미측과 개정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작년 6월 동두천에서 발생한 이기순여인 살해사건의 처리내용, SOFA 개정협상의 현재까지 경위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용산기지 5만평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데에 대해서 정부로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용산기지는 연합군의 지휘통제기지로서 그 부지의 일부 반환은 기지로서의 임무수행능력 저하 그리고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체 용산기지의 이전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97년 1월 이래 수차에 걸쳐서 우리측 타결방안에 대한 미측 입장을 조속히 제시하도록 수시로 촉구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 9월 24일 뉴욕에서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본인이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에게 이 협상의 조속타결 필요성을 재언급한 바가 있고 미국도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추가협상을 개최하여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하생략 -

(3) 권오기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

정부는 지난 95년 11월이래 미측과 일곱차례 SOFA개정협상을 진행하여 SOFA규정의 전반에 걸쳐서 포괄적이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으며 96년 12월 우리 정부의 일괄 의결안을 미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협상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양국간의 상이한 법체계와 사법실행을 조화시키면서 또한 한국의 사법권 행사 강화가 주한미군의 전투준비 태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상호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관련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하생략 -

6)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제15대 1999. 10. 15)

(1) 박철언의원 질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의 개정문제 등 불평등관계 시정을 위한 우리 장관의 실천의지를 다짐하고 또 장관께서는 이 SOFA개정을 위해서 여러 차례 미국당국과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현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지난번뿐만 아니라 상임위 질의 답변서에 몇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워싱턴 주미 우리 한국 대사관 이홍구 대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시에 제가 이 SOFA 개정문제에 대해서 외교부로부터 또 외교부장관으로부터 그런 지시와 얘기를 들었느냐라는 질의를 하니까 이홍구 대사 답변이 별도의 지시가 없었다 미국측에 특별히 SOFA 개정문제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 별도로 따로이 무슨 미측에 설명한다거나 얘기한 적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장관의 이 국회에서의 답변과 우리 현지 한국대사의 답변이 정면으로 상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대미외교의 현주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대미저자세 종속적인 그런 동반자 관계는 하루속히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이하생략 -

(2) 홍순영통일부장관 답변

예. 이것은 제가 사실 취임이래 SOFA협정 개정 협상문제를 끈기 있게 제기를 해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공개연설에서도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한미간의 영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까지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이 교섭을 주로 여기 서울에서 했습니다. 여기 대사관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제가 대사한테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잘 아시다시피 형사재판관할의 문제, 환경법의 적용문제, 노동쟁의에 관한 문제 이런 세 가지 큰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괄해서 전부다 한번에 타결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개정 가능한 부분 우선적으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부터 시작해서라도 단계적으로라도 좋으니 협상을 재개 하자 해서 금년 중에 일단 협상을 양쪽 입장을 가지고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스탠리 로스 차관보가 왔을 때 제가 그렇게 제의를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주미대사께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제가 책임을 지고 이것은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사의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좀 제가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 이하생략 -

7) 의사진행발언(국회본회의 제15대 제208회 제10차 1999. 10. 26)

(1) 이신범의원 질문

정부의 대일 대미 대중외교의 저자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대미외교에 있어서 노근리사건에 유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위원회를 관찰하지 못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외교는 내치의 연장입니다.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주장했습니다마는 국내에서 고문 도청 시비가 일고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권 확대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저는 어느 미국 외교관으로부터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치가 외교

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이하생략 -

(2) 홍순영외교통상부장관 답변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이신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과의 SOFA협정 등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주적인 판단과 국가이익을 염두에 두고 대미외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SOFA 협정 개정을 위한 회담을 개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 중 개최에 대해서 한미간에 이미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SOFA협정 개정에 있어서는 형사재판 관할권과 관련해서 신병인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한 번에 해결한다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라도 개정 가능한 분야를 개정한다는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생략-

8) 환경노동위원회(제16대 제212회 제12차 2000. 6. 21)

(1) 오세훈위원 질문

매스컴에서 어제 오늘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미군 주둔기지 주변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미군기지 주변과 기지내의 환경오염문제가 매향리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를 위시한 정부당국은 미군측의 환경파괴행위에 대해서 여하한 제재조차도 취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것은 현재의 SOFA 즉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환경관련 규정이 전무한 데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환경부장관께서는 현 미군기지의 환경오염과 환경파괴 현실에 대한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미군기지 주변의 전면적 환경실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는 그 동안에 환경보호, 국토수호 차원에서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SOFA에의 환경규정 삽입을 위해서 노력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없었다면 앞으로 환경실태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OFA개정과 무관하게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실태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마련해 놓고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김명자환경부장관 답변

신문지상 뉴스에서 자주 보도가 되고 있어서 환경부로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환경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53년에 체결한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해서 미군의 한국주둔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SOFA가 체결된 것이 66년이었고요. 거기에는 환경관련 규정이 거의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독일 SOFA의 경우 유일하게 환경규정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현안환경문제의 협의를 위해서 SOFA 합동위원회산하에 환경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환경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사안별로 문제제기를 하고 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의왕시 매디슨기지에 기름유출사고가 났을 때도 기지내의 사고시설에 대해서 전면 개, 보수하고 그리고 방재작업을 실시하고 또 세 차례 합동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98년 5월에서부터 99년 10월 사이 세 번입니다.

그리고 군산, 오산, 이런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오수 이것이 인근 지자체 하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SOFA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실무차원에서 제한적인 협의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한 체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OFA협정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그 동안에 해 왔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95년부터 96년에 걸쳐서 7차례 한·미간 협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환경부는 SOFA의 환경기준을 신설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우선 주무부처이니까 함께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 한 채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SOFA개정협상이 재개되면 외교부와 협조해서 저희가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외교부 채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SOFA에 우리 국토환경보전하고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환경관련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하생략 -

9) 통일외교통상위원회(제16대 제212회 제12차 2000. 6. 21)

(1) 이창복위원 질문

SOFA개정운동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정되고 나서 한번 개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개정될 때마다 상당히 미흡한 정도로 균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공평하고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SOFA협정 개정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동안 외교통상부로서는 이 개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이하생략 -

(2) 이정빈외교통상부장관 답변

1966년에 SOFA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지난 91년에 제 1차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60년대에 저희들이 SOFA 체결을 요했던 상황하고 삼십 년이 지난 지금 상황하고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60년대 당시에는 환경문제라는 것이 거론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환경문제나 근로자들의 생의문제 이런 생존권 문제가 클로즈업이 되어 가지고 과거에 규율되지 않았던..... 행정협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다시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상황변화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최초의 협정에 따르면 피의자를 저희들이 인수받는 시기가 확정판결이 된 이후에야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사당국에서 신병확보를 않고는 여러 가지 수사하는데 문제 가 있다 해서 피의자 기소단계에서 인수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신병인도시기도 고쳐야 되겠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 문제를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 이상생략 -

10) 자유발언(국회본회의 제16대 제213회 제4차 2000. 7. 10)

(1) 원유철 의원(새천년민주당)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약칭 SOFA라고 하는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행정협정개정의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정부당국과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50년 한국전쟁 당시 UN군의 주축으로 미군이 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권 이양과 함께 주둔군으로서의 미군의 법적 지위를 일괄 인정하게 된 이후 1966년에 공식적으로 한미 양국간에 행정협정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협정의 내용 중 몇 개의 조항이 독립국가간의 협정으로 모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극히 불리한 형태로 수십년간을 지속하여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은 전세계에 주둔하게 되었고 각국은 우리와 똑같은 형태의 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을 맺었지만 그 어떤 나라도 한국과 맺은 협정처럼 불평등한 협정은 없었으며 설사 있더라도 문제점이 불거지면 즉각 개정하였던 것입니다.

독일주둔 미군의 경우 미군의 기지도 독일의 환경법 적용을 받아 환경부담금 일본주둔 미국의 경우에는 중범죄의 경우 기소전에 미군의 신병처

리를 일본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우리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수많은 문제 제기와 몇 차례에 걸친 협상테이블이 마련되었습니다 만은 미국측은 협정개정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수많은 사건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협정 때문에 주권국가로서의 법 집행이 불가능하고 미군기지 주변의 각종 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를 입고 있어도 전혀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매향리 미군사격장의 처리문제도 정당한 항의를 하였던 우리 국민이 오히려 범법자 되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을 잊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반도에서 미군기지가 차지하는 역사적인 배경과 역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으로 한반도에는 화해와 협력의 기틀이 마련되어 습니다

이러한 남북간의 긴장완화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체제가 구축할 때까지 일정 기간동안 미군의 한반도주둔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국제평화를 위한 미군의 주둔이 지위협정의 독소조항 문제로 인해서 그 의미가 상실되지 않기를 미국측에 진심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간의 한 차원 높은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SOFA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미국정부는 직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정부당국도 이 문제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주권국가로서의 정당한 요구와 함께 협정 개정에 최선의 노력에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SOFA 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에 주실 것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들께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이하생략 -

11) 정치에 관한 질문 中(국회본회의 제16대 제213회 제5차 2000. 7. 11)

(1) 정동영의원 질문

미합참 연구보고서 내용에 보면 한반도에서의 위협이 사라질 경우에는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지위문제 등과 관련해서 이제 주둔군으로서가 아니라 미군은 손님, 게스트 또는 동반자, 파트너로서 행동해야 할 것이다 하는 충고와 함께 SOFA 주둔군지위협정도 접수국의 관할과 지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미국이 SOFA 개정안 초안을 내놓은 것에 보면 오히려 본국의 이러한 정책검토와는 상반된 강경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한동국무총리 답변

정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국의 SOFA 등 해외주둔미군에 관한 신분과 관련된 그 나라의 사법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접근하는 미국의 입장은 미국군인이 외국법정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각에서 미국은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따라서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강경한 그런 입장의 기조를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지만 저희의 세 가지 큰 요구사항도 상당히 논거가 있고 또 주권국가로서 그 정도는 요구하는 것이 당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협상에 당당하게 임할 그런 자세로 현재 있습니다.

(3) 임종석의원 질문

총리께서는 앞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SOFA 개정에 대해서 신병인도 시기나 환경오염 그리고 미군내 한국인 노동자의 인권 등에 대해서

다 포함해서 협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4) 이한동국무총리 답변

예.

(5) 임종석의원 질문

현재 미군하고 구체적으로 다툼이 되고 있는 내용은 신병인도 시기에 대한 것이었지요?

(6) 이한동국무총리 답변

신병인도 시기뿐 아니라 신병인도의 대상인 범죄에 대해서도 아직 의견이 있습니다.

(7) 임종석의원 질문

나머지 환경오염이나 미군내 한국인 노동자 인권 그리고 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있습니까?

(8) 이한동국무총리 답변

우리 한국 측은 환경, 검역 등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양측이 타협을 한다면 선언적인 규정을 하는 것까지도 일단 좋다,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미국 측은 아직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9) 임종석의원 질문

저희가 포괄적으로 협상을 하려는데 반해서 지금 미국 측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

(10) 이한동국무총리 답변

그 부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11) 임종석의원 질문

어제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이 밝힌 5월 말에 주한미군 쪽에서 보내온 SOFA개정 시안을 보셨습니까?

(12) 이한동국무총리 답변

보았습니다.

(13) 임종석의원 질문

거기에 보면 실제로 내용이 오히려 굉장히 개악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 이한동국무총리 답변

저희가 기대했던 것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제시안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협상이 난항을 겪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15) 임종석의원 질문

제가 모든 여러분께 참고가 되기 위해서 한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한국 쪽에 통보된 SOFA개정 시안입니다. 미국쪽에서 보내온 미군 범죄인의 신병이 한국 쪽에 넘겨진 이후 중대한 법적 권리침해가 발생하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한미군사령관이 판단하는 경우 한국은 형집행을 할 수 없고 미국 쪽이 요구할 때는 피의자 신병을 미국 쪽에 해야 하며 한국 쪽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SOFA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지요.

(16) 이한동국무총리 답변

제가 가진 자료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계시네요.

(17) 임종석의원 질문

어제 신문에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이 5월말에 보내온 시안이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심각한 사법주권의 침해 아닙니까?

(18) 이한동국무총리 답변

아까 정동영 의원도 같은 취지의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미국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경직된 그런 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설득을 하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19) 임종석의원 질문

지난 10년간 SOFA와 관련한 평균 범죄건수를 대충 아십니까? 829건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약 3.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기어하고 계시지요?

(20) 이한동국무총리 답변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21) 임종석의원 질문

일본에도 미국의 기지가 있는데요. 일본은 5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매년 기지 사용료로 9,600만불을 내고 있습니다. 필리핀 수빅만 해군기지도 만료가 되어서 반환 받으면서 기지 사용료를 징수해 받았습니다. 우리 실태는 어떤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22) 이한동국무총리 답변

우리는 미군기지 사용료를 지금 아마 받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23) 임종석의원 질문

기지 사용료를 받겠다는 내용도 우리 협상안에 들어 있습니까?

(24) 이한동국무총리 답변

그것은 이번 협상안에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25) 임종석 의원 질문

지난 2월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주일미군 범죄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26) 이한동 국무총리 답변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27) 임종석 의원 질문

굉장히 일본을 시끄럽게 했던 사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일미군 지휘자가 오키나와 당국자에게 머리를 조아려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미국 대사가 고노 요헤이 일본외상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21일에서 23일 사이에 클린턴 대통령이 오키나와를 방문해서 주일미군의 이 만행에, 비행에 분노하는 현지 주민들과 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에게는 훨씬 더한 노근리학살사건도 밝혀졌고 매향리 주민들의 엄청난 피해도 밝혀졌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보신 것 있습니까?

(28) 이한동 국무총리 답변

이 SOFA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당초의 66년 7월달에 제일 처음에 맺은 SOFA협정, 그것을 91년 2월달에 한번 1차개정을 했는데 그러한 협정체결과 또 1차개정을 통해서도 너무도 우리 입장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럴 때마다 저희는 나토와의 협정이나 이스라엘과의 협정 또는 주일미군과 일본정부간의 협정, 이런 것을 언제든지 제시하면서 우리의 주권독립국가의 그런 위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선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주한미군과 우리 한국과의 안보 동맹상의 여러 가지 관계라는 것이 일본이나 필리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단계적으로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개선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걸맞게 계속 개정을 협상해 나가

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봅니다.

(29) 임종석 의원 질문

저는 이 사안은 정부와 여야가 모두 힘을 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0) 이한동 국무총리 답변

맞습니다. 국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의 힘의 배경이 되고 협상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입장에서 큰 힘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1) 임종석 의원 질문

그러면 앞으로 이 국가주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총리께서 앞으로 정부와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좀 발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 이한동 국무총리 답변

유념하겠습니다.

- 이하생략 -

12)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中

(제16대 제213회 제6차 2000. 7. 12)

(1) 김기춘 의원 질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입니다

앞으로 SOFA 협상이 재개되면 NATO SOFA형이나 미·일협정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군인·군속의 가족에 대한 재판관할권문제, 범죄자의 신병인도시기, 환경과 노동문제 등에 대한 불평등을 마땅히 시정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이견은 무엇입니까? 그 해결책과 전

망은 어떠합니까?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2)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 답변

SOFA 개정 관련 한·미간 의견은 무엇이며 해결책과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성구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협상개최 지연이유, 미국측 협상문안 내용, 정부대책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상개최 지연이유입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SOFA 개정에 대한 우리측 협상안을 미측에 제시했으며 미측은 이에 대한 자국입장을 조기에 제시할 것을 다짐해 오던 중에 지난 5월 31일 우리측에 협상안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간 정부는 관련부처간 실무협의를 통해서 미측 안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서 오는 8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SOFA 개정 협상을 개최하기로 미측과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미측 협상문안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5월 31일 미측이 전달한 개정문안은 우리측이 재판관할권 행사범위를 축소하고 미군 피의자에 대한 권리보호장치 등을 보장해 줄 경우에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현행 재판 종결 후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데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우리 입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측 문안은 우리가 요구하는 환경문제, 노무문제, 검역문제 등 재판권 이외의 분야는 포함치 않고 있습니다.

미측 협상문안을 전달받은 이후에 외교통상부로서는 법무부와 국방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측 협상문안에 대한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 한·미관계의 확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간의 우리 국내 상황의 변화 또 SOFA를 보는 국민여론 또 현재의 협정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맺고 있는 협정내용의 차이 등 제반요인을 감안해서 앞으로 SOFA 개정교섭에

임하고자 함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3) 강성구 의원 질문

앞으로 남북한 협상과정의 진전에 따라서 이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변경 문제는 계속 논의의 쟁점으로 부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분명히 해야 할 문제는 1966년에 체결된 SOFA, 즉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의 개정입니다.

최근 한미 양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유지 및 양국관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현행 SOFA를 개정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의 개정안은 아직도 한반도 현실을 너무나 무시한 일방적인 것입니다.

사실 현행 한미 SOFA는 타국 SOFA에 비해서 출발부터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 체약국간의 협정, 즉 NATO-SOFA는 외국주둔군의 법적 지위를 규율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한 평등조약이며 독일 영역내의 외국주둔군에 대해 적용되는 독일보충협정은 NATO-SOFA의 일반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확보 개선한 주둔군지위협정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한미 SOFA의 본 협정은 NATO-SOFA와 기타 타국의 주둔군지위협정과 비교해서 매우 부당하고 불평등한 조약이라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은 동맹국인 한국과 한국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지, 한국의 환경자원을 파괴하고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기 위해서 주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1998년 6월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인권은 모든 사람들의 천부적인 권리이며, 자유는 전진을 위한 강력한 엔진이다"라고 연설한 바와 같이 한국 국민의 인권과 자유는 미국 국민의 인권과 자유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타국의 SOFA와 마찬가지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평등

조약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주한미군의 필요성과 주둔의 당위성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상충되는 국민의 생존권 문제를 어떻게 양립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난 96년 9월에 중단된 이 SOFA 개정협상은 당초 지난 6월 중에 재개될 계획이었지만 오는 8월 2일 서울에서 다시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31일 우리측에 전달된 미국측의 협상안을 살펴보면 한국의 사법체계를 전면 부인하고 미군 피의자의 신병에 대해서 사실상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우리 법체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법주권의 침해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따라서 이것은 현행 불평등 내용을 더욱 불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SOFA 개악은 결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장관은 이미 미국측 안의 일부 내용을 밝혔지만 가능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대미 협상안을 액면 그대로, 미국의 안을 액면 그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측은 확실히 SOFA를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또 왜 이렇게 협상이 지연된 것인지, 아울러 이에 대처해서 우리 정부의 확실한 복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 SOFA가 진정한 평등조약으로 전면 개정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도 국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의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가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데 말도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의 궁극적 목표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두웠던 지난 날 한때 '안보'를 위해서 생존권을 희생하라는 주장은 이제 그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매향리 사격장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오폭사건으로 인해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이 사태는 더 이상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매향리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6월 대구에서는 전국 12개 미군기지 주둔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미군기지 문제는 자치단체 스스로가 해결할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국가적인 과제임을 강조하고 정부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한 감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향리는 이름 그대로 매화향기 그윽한 마을을 뜻합니다. 이는 마을 바닷가 모래톱에 매화꽃이 무성하게 활짝 피어오를 때 그 향기가 온 마을에 진동했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의 그 아름답던 매화꽃은 온데간데없고 미군 전투기의 요란한 폭격 굉음과 주민들의 원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매향리 쿠니 사격장은 미공군 폭격기들이 연간 250여 일에 걸쳐서 포탄을 퍼붓는 군사전략상 매우 긴요한 사격장이지만 지난 50년간 유탄과 소음피해로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이제 매향리 주민들은 사격장 철폐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고 일부 사회단체들까지 가세해서 이번 기회에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대규모 시위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폭과 불발탄사고 등으로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끊임없는 소음의 영향을 받아서 매향리 사람들의 평소 말소리가 유난히 크다는 사실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1988년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생존권 투쟁을 벌이면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경기도 오산·화성 출신의 지역구의원으로서뿐만 아니라 국정에 책임 있는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당국에, 또 미군당국에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보다 성의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매향리사태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지난 5월 오폭사건 이후 한·미합동조사위원회의 '피해 없음'이라는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들에게 직접·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 향후 실질적인 피해보상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조성태국방부 장관 답변

다음 강성구 의원님께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한 한미연합억제전력으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안보비용을 절감케 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세력균형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남북한 관계의 진전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지역의 안정자 역할을 위해서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의원님께서는 5월8일 매향리 비상폭탄투하사고에 대한 한미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향후의 피해보상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매향리 주민들께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국방부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8일 비상폭탄투하로 인한 피해여부에 대한 조사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지역주민이 선정한 전문기관 등이 함께 참여한 한미합동조사인 만큼 과학성과 객관성의 원칙에 충실했던 조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6월5일 국방부 발표시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당시 한미합동조사는 5월8일 비상폭탄투하로 인한 피해

만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을 뿐 과거의 누적피해에 대해서는 합동조사의 대상이 아니었던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들께서 6월5일 발표에 대해서 국방부가 마치 과거의 직·간접 피해 전부를 부인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주민들께서 피해를 신고하시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에 따른 보상대책과는 별도로 국방부는 실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난 6월7일 수도군단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민지원통제단을 편성해서 매향리지역 일대의 가옥수리, 방역 등의 대민지원을 적극 수행하고 있고 아울러 폭격훈련장에 인접한 매향 1리, 5리 주민들의 이주문제는 주민들의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여 앞으로 신축성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기총사격장의 소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6월23일 공군참모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단을 구성해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미측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전면개정 촉구 결의안(제16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제213회 제1차 2000. 7. 24)

(1) 위원장 박명환

그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전면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김원웅 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원웅 의원

김원웅 의원입니다.

지난 7월21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전면 개정 촉구결의안'이 이부영, 이창복, 장영달, 김원길, 이미경 그리고 저 김원웅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찬성자 60명으로 국회에 정식 제출되었습니다.

그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이 독일, 일본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주둔군지위협정에 비해 현저히 불평등하다는 것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불평등한 협정의 내용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확인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저항이 날로 거세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제나마 개정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그 동안 개정협상을 지연시키고 회피해 왔으며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에 관한 미국측의 협상안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은 우호적인 한·미관계에 우려를 끼칠 정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의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을 한·미간의 평등한 협정으로 신속히 개정하도록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미군의 형사관할권, 민사소송, 미군의 군사시설 및 기지, 환경, 노무, 겸역문제 등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전반과 이의 부속문서를 전면 개정할 것을 한-미 양국의 당국자에게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정부가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으로 인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심각히 인식하고 이를 상호 호혜적인 한-미 관계에 걸맞는 내용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길 촉

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협상에서 독일 및 일본 등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는 평등한 협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의 당국자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협상을 추진하고 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은 미국이 독일, 일본 등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에 비해 현저히 불평등 함.

최근 매향리의 미군사격장 피해 및 한강에의 독극물 유출사건 등은 단순히 피해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생존권의 침해 그리고 우리 영토의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오염문제를 촉발시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이 불평등하게 체결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취약한 실정임.

이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불평등한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에 여러 차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그 동안 이를 극력 지연, 회피해 왔음.

이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대등한 우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임.

미국이 최근 제시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안은 우리 정부와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악안이며 우리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임.

따라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중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조항을 과감히 삭제하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을 독일과 미국, 일본과 미국이 맷은 주둔군지위협정과 같은 대등한 수준으로 개정해야 할 것임. 이에 미국의 성실한 협상태도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이상입니다.

(3) 위원장 박명환

이 결의안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지금 김원웅 의원에게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4) 유흥수 위원

이 결의안을 어디에 전달합니까? 미국 정부입니까, 미국의회입니까, 양쪽 다 입니까?

(5) 위원장 박명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본회의에서 국회결의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이산가족상봉에 협조를 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 기억나시지요?

(6) 유흥수 위원

결의안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결의안을 하면 결의만 해두는 것이 아니고 그 결의안을 어디에 전달하겠지요. 미국 정부나 미국의회나 또는 양쪽에, 어디에 전달할 것인가는 것입니다.

(7) 위원장 박명환

이 결의안은 당연히 한·미 양국 협상테이블에 전달하는 방법을 간사회의에서 결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8) 유흥수 위원

협상테이블에 전달한다?

(9) 위원장 박명환

한·미 양국 당국자입니다.

(10) 유흥수 위원

미국의회에도 전달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1) 위원장대리 조웅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는데 결의안심사소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소위원장 문희상

결의안심사소위원장 문희상 위원입니다.

대체로 다섯 분 소위원 중에서 네 분이 참석했는데 근본취지에 전혀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견이 합의가 됐습니다. 단 문안에 잠깐 수정될 부분이 있어서 몇 군데 고쳤습니다. 그 수정된 문안을 이 자리에서 낭독하겠습니다.

주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이 독일, 일본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주둔군지위협정에 비해 불평등하다는 것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불평등한 협정의 내용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여러 분야에 걸쳐 확인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우려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제나마 개정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 동안 개정협상을 지연시키고 회피해왔으며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의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을 한미간의 평등한 협정으로 신속히 개정하도록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미군의 형사관할권, 민사소송, 군사시설 및 기지, 환경, 노무, 검역문제 등 주한미군지위협정상의 불평등한 내용을 개정할 것을 한미양국의 당국자에게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정부가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으로 인한